

# 사회주택토지지원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

## 심사 보고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2 |
|----------|-----|

2018. 11. 21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0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8.11.21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여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던 사회주택사업에 중앙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.
- 토지지원리츠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년세대를 비롯하여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함.
-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현금출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1) 출자대상 기관

- 기관명칭 : (가칭)서울 사회주택 토지지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- 출자금액 : 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:2로 공동출자
  - '18년 출자금액은 10,000백만 원

### 2) 주요사업

- 사회주택 부지의 매입
- 사회주택 부지의 임대

### 3) 출자 필요성

- 사회주택 부지 매입을 위해 공사가 보통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은 우선주로 출자
-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택을 건설 부지확보 부담을 경감시켜 저렴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유도
- 공사와 중앙정부가 사회주택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동 투자기구 육성

### 4) 취득되는 권리와 출자에 따른 반대급부

- 출자지분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
- 부동산투자회사의 매기 운영수익에 대해 배당수익 수취
- 운영종료 후 부동산투자회사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각이익 또는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수익 수취

## 5) 취득되는 권리의 처분계획

- 사업 종료 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산
- 사회주택공급 확대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, 부동산투자회사법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,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 제2항

2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5조(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)

3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제7호

※ 지방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음

4)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)

※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금·인력·현물출자·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'18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- 서울시 방침

-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계획 - 사장 방침

## 4. 검토보고의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### □ 동의안 제출 배경

- 이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주택 공급 토지확보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“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”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제2항<sup>1)</sup>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안임.

### □ 사업추진 배경

- 현재 서울시가 “토지임대부 사회주택”, “리모델링형 사회주택”, “빈집 살리기 프로젝트” 등 3가지 유형<sup>2)</sup>의 사회주택을 공급중인 가운데, 지난 제277회 정례회(2017년 11월)에서 시의회 승인 후 설립·운영 중인 “사회주택리츠”는 “비주택 매입형(리모델링형)”, “공공부지 신축형”, “노후·다가구 재건축형”, “토지임대부 지원형”의 총 4가지 유형의 사회주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

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) 현행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유형

| 구분    |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|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급 방식 | 신축 또는 리모델링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주택 리모델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(빈집) 리모델링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 방식 | 토지매입비를 SH공사에 출자, 부지매입 후 장기임대(40년) | 민간공모 방식으로 리모델링비 지원(동당 2~4억원 이내), 시(SH공사) 직접매입·리모델링 후 위탁관리 | 민간공모를 통해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(동당 2천~4천만원) |
| 대상 건물 | 다세대·다가구, 다중주택, 도시형생활주택            | 고시원, 모텔, 여관 등 비주거시설(15년이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이상 빈집 (방3개 이상)                |
| 공급 주체 | 사회적 경제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적 경제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적 경제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급 대상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(1인), 100%이하(多인) 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              |
| 주거 요건 | 최장 10년<br>시세80% 이하                | 최장 10년<br>시세8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장 10년<br>시세80% 이하               |

택을 공급하고 있음.(붙임 1 참고)

- 그러나 2015년 사회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공급실적은 933호에 그치고 있고, 사회주택리츠 사업 역시 102실을 공급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회주택의 양적 확충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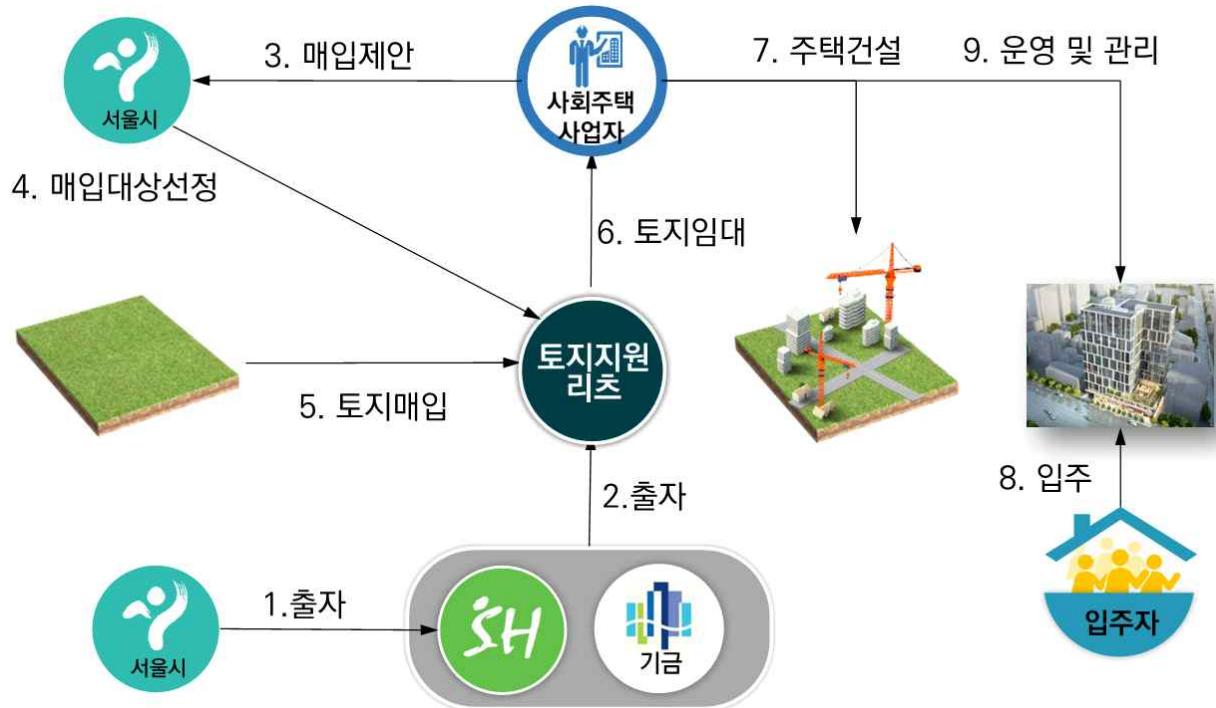
| 기존 사회주택 공급사업 실적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사회주택리츠방식 공급실적 |       |   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|
| 소계              | 토지임대부          | 리모델링           | 빈집 살리기         | 소계            | 리모델링형 | 신축형 | 재건축형 | 토지임대부 |
| 총 933호          | 268호<br>(19필지) | 317호<br>(13개동) | 246호<br>(38개동) | 총 102실        | 54실   | 48실 | -    | -     |

## □ 사업개요

-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“SH공사”)와 주택도시기금이 1:2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하려는 것으로, SH공사의 출자재원은 기 편성 · 출자된 201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예산 중 100억원<sup>3)</sup>을 우선활용할 계획임.
- 토지지원리츠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부터 매입대상 토지를 공모하고, 공모 제안된 부지 중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이를 당초 제안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30년간 임대하게 되며, 사업종료 후에는 건축물을 리츠가 매수하는 구조임.
- 현재 SH공사는 예산규모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 당 토지매입금액을 18억 원으로 제한하고, 2종 일반주거지역 내 330㎡미만의 필지를 중심으로 매입 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의 건설 · 공급을 유도해 왔으나.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사업자당 토지매입금액을 50억원으로 확대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및 330㎡ 이상의 토지까지도 매입가능토록 함으로써 중규모 개발을 유도할 계획임.

3) 201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예산 188억 중 잔여금을 활용할 계획임

### 〈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〉



#### □ 사업비 및 재원조달

-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의 총 사업비는 1,667억 6천1백만원이며, 운영 기간(30년)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,044억 5백만원임.

### 〈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총사업비 / 재원조달〉

| 사업비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항목별      | 금액<br>(백만원) | 비 중<br>(%) |
| 토지매입관련비용 | 118,616     | 26.24      |
| 건물매입관련비용 | 75,257      | 36.82      |
| 부대비용     | 200         | 0.10       |
| 리츠운영비용   | 5,858       | 2.87       |
| 부동산관리비용  | 4,473       | 2.19       |
| 합 계      | 204,405     | 100.00     |

| 재원조달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|        | 금액<br>(백만원) | 비 중<br>(%) | 비 고 |
| 자<br>기<br>자<br>본 | 주택도시기금 | 80,000      | 39.1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SH공사   | 40,000      | 19.6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| 120,000     | 58.7       |     |
| 타<br>인<br>자<br>본 | 임대료    | 84,405      | 41.3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| 84,405      | 41.3       |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|        | 204,405     | 100.0      |     |

## 〈사업수지〉

(단위 : 백만원, 불변가격 기준)

| 구분      | 합계       | 2018년    | 2019년    | 2020년  | 2021년 | 2022년이후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수익 - 비용 | 45,063   | (28,619) | (89,161) | 428    | 2,022 | 160,393 |
| 수익      | 임대수익     | 70,308   | -        | 45     | 684   | 2,268   |
|         | 매각수익     | 130,118  | -        | -      | -     | 130,118 |
|         | 이자수익     | 11,397   | 1        | 13     | 6     | 11,359  |
|         | 소계       | 211,823  | 1        | 58     | 690   | 2,286   |
| 비용      | 토지매입관련비용 | 116,844  | 28,242   | 88,602 | -     | -       |
|         | 건물매입관련비용 | 39,384   | -        | -      | -     | 39,384  |
|         | 부대비용     | 200      | 200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 |
|         | 리츠운영비용   | 5,858    | 178      | 593    | 161   | 161     |
|         | 부동산관리비용  | 4,473    | -        | 24     | 102   | 104     |
|         | 소계       | 166,761  | 28,620   | 89,219 | 262   | 264     |
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| 48,395  |

## □ 검토사항

- 우선, 한일회계법인이 수행한 “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사업 수익성 평가” 결과4),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의 총 수입은 3,307억 4천4백만원, 총 사업비는 2,044억 5백만원, 배당금은 1,263억 3천9백만원으로, 이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를 2051년까지 운영 시 공사출자금 400억원에 대한 배당수입은 545억 1백만원으로 분석되어 수익율(IRR) 2.69%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주택도시기금 차입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 사업전체 투자수익율은 2.25%로 분석됨.
- ROE(자기자본이익율)는 136.25%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 DSCR (부채상환비율)은 31.37로 차입금 미상환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

4) 한일회계법인, 「서울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출자타당성 검토보고서」, 2018.10

| 구 분      | 출자금<br>(백만원) | 배당액<br>(백만원) | IRR   |       | ROE     | 누적DSCR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택도시기금   | 80,000       | 71,838       | 2.00% | 2.25% | 136.25% | 31.37  |
| 서울주택도시공사 | 40,000       | 54,501       | 2.69% |       |         |        |

## 둘째, 재무적 수익성 분석결과,

불변 가격 기준 수입액 2,118억 2천3백만원, 지출액 1,667억 6천1백만원, 수지차는 450억 6천3백만원으로, 할인율 4.5%를 적용한 결과 현재가치는 △575억 3천9백만원, 수익성지수는 0.551, 내부수익율은 1.31%로써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.<sup>5)</sup>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|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사업 수지<br>(불변가격 기준)      | 수입(a)      | 211,823백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출(b)      | 166,761백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지차(a-b)   | 45,063백만원  |
| 재무적 수익성<br>(할인율 : 4.5%) | NPV(현재가치)  | △57,539백만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PI(수익성지수)  | 0.551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IRR(내부수익율) | 1.31%      |

※ NPV(현재가치) : 0보다 높을 경우 사업성 있음

PI(수익성지수) : 1보다 높을 경우 사업성 있음

IRR(내부수익율) : 자본비용을 4.5%보다 높을 경우 사업성이 있음

5)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기준은 당초 시의회 동의안 제출시 분석을 기준으로 세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함. ① 순현재가치(NPV)법은 순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양(+)의 값을 가질 경우, ② 수익성지수(PI, Profitability Index)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클 때 사업성을 갖추며, ③ 내부수익율(IRR)법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(NPV)가 0이 되는 할인율(IRR)이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클 경우, 당해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.

이 사업분석시 현재가치는 연 4.5%(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편, 기획재정부, '17.8.11)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, 모든 현금흐름은 연도 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.

- 재무적 수익성은 임대수입 상승율보다 물가상승할인율을 높게 가정하여 수지적자가 커지며, 사회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안정편익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임.

### 셋째, 경제적 수익성의 경우,

총 수입은 3,327억 1천6백만원, 총비용은 1,667억 6천1백만원, 수지차는 1,659억 5천5백만원으로 할인율 4.5%를 적용한 결과, 현재가치는 75억 4천5백만원, 수익성지수는 1.06, 내부수익률은 4.93%로써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|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업수지<br>(사회적 편익이 반영된<br>불변가격 기준) | 수입(a)      | 332,716백만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출(b)      | 166,761백만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지차(a-b)   | 165,955백만원  |
| 경제적 수익성<br>(할인율 : 5.5%)          | NPV(순현재가치) | 7,545백만원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I(수익성지수)  | 1.06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RR(내부수익률) | 4.93%       |

※ NPV(현재가치) : 0보다 높을 경우 사업성 있음

PI(수익성지수) : 1보다 높을 경우 사업성 있음

IRR(내부수익률) : 자본비용을 4.5%보다 높을 경우 사업성이 있음

-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수익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재무적 수익성 산출 시에는 주거안정편익<sup>6)</sup>을 수입에 가산하지 않으나, 경제적 수익성에서는 수입에 가산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임.

6) ‘주거안정편익’은 토지매매가격의 조달비용과 토지임대료의 차이를 감안하여 산출하였음.

넷째,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,

생산 및 수입유발효과,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| 유발계수  | 효 과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생산유발효과   | 1.655 | 338,291 |
| 수입유발효과   | 0.065 | 13,286  |
| 부가가치유발효과 | 1.243 | 254,076 |

- 종합하면,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사업은 청년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사회주택의 공급확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 - 다만, 이 사업은 보유자산을 30년간 임대 후 해당부지의 주택가격에 연동하여 매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관리전략이 필요할 것이며,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낮아지므로 민간기업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  -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리츠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용 토지지원과 병행하여 제도적 보완·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참여 유도 및 확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동의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 사회주택토지지원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

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32 |
|--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여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던 사회주택사업에 중앙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.
- 나. 토지지원리츠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를 강화하고자 함.
- 다.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현금출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자대상 기관

- 1) 기관명칭 : (가칭)서울 사회주택 토지지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- 2) 출자금액 : 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:2로 공동출자  
- '18년 출자금액은 10,000백만 원

### 나. 주요사업

- 1) 사회주택 부지의 매입
- 2) 사회주택 부지의 임대

#### 다. 출자 필요성

- 1) 사회주택 부지 매입을 위해 공사가 보통주로 출자하고 주택 도시기금은 우선주로 출자
- 2)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택을 건설 부지확보 부담을 경감 시켜 저렴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유도
- 3) 공사와 중앙정부가 사회주택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동 투자기구 육성

#### 다. 취득되는 권리와 출자에 따른 반대급부

- 1) 출자지분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
- 2) 부동산투자회사의 매기 운영수익에 대해 배당수익 수취
- 3) 운영종료 후 부동산투자회사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각이익 또는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수익 수취

#### 라. 취득되는 권리의 처분계획

- 1) 사업 종료 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산
- 2) 사회주택공급 확대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, 부동산투자회사법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,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- 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 제2항
- 2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5조(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)
- 3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제7호

\* 지방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음

4)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)

※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금·인력·현물출자·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'18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- 서울시 방침

-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계획 - 사장 방침

※ 작성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 개발금융처

(부장 남상국 ☎ 3410-7099 / 담당 백두진 ☎ 3410-7101)